

계절수업 운영 규정

제정 2004. 3. 1
 개정 2004.12. 1
 개정 2012. 7. 1
 개정 2016.10. 31
 개정 2017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절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"계절수업"이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(이하 "정규학기"라 한다)와는 별도로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.

제3조(수강대상)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에 한한다.

제4조(개설과목) 계절수업의 개설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수강신청) 수강희망 학생은 수강할 교과목을 정규학기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하며,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.

제6조(교과목의 재이수) 계절수업에는 성적이 C+ 미만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를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,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에 불구하고 원취득 성적은 무효로 한다.

제7조(수업) ① 수업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. 단, 야간의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.

② 선택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10인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 할 수 있다. (단, 수강신청자가 10인 미만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폐강처리 하지 않을 수 있다.)

제8조(수강료) ① 계절수업 수강료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20으로 나눈 금액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학생은 계절수업 등록 시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수강료는 결석 등으로 인하여 금액,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단, 개설 취소된 교과목의 수강료는 환불한다.

③ 사이버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(학점) ① 계절수업에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② 매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.

제10조(강사위촉) 계절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은 개강 전에 강사를 위촉하여야하며 전임교원을 우선하고 외래교수 순으로 한다.

제11조(강사료 지급) 계절수업의 강사료는 학기 중 외래교수강사료 지급기준(C등급)에 따라 지급한다. 단, 수강생 수에 따라 강사료 변경이 가능하며, 사이버 강좌의 경우 강사료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.

제12조(성적평가) 학칙 제31조 및 동시행세칙 제27조에 의한다.

제13조(성적처리)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칙에 규정된 학점으로 인정하되 정규학기 평균산출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, 전체성적(졸업학점)의 평점평균에는 산입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